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7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임광현의원안)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0. 24.
- (3) 회 부 일 : 2024. 10.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税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

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5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임광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제120조의5 신설) ○ 적용대상: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6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주식양도소득, 채권양도소득 등 ○ 자료제출 의무: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임광현의원안 2024. 10. 24. 제출(의안번호 4879)

☐ 개정안은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에 따라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대주주 제외)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고 있

지 않음.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 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는 주식 및 채권 양도에 따른 이익, 펀드 환매 및 양도에 따른 이익 등이 익금으로 전부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음.¹⁾

□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이 제출받음으로써, 법인의 금융투자이익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이바지하여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채권양도소득 등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런데 법인에 지급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이 제출받으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함으로써 법인세 탈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법인세법」

제15조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법인세 원천징수 확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²⁾

이처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것은 법 제73조,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위한 것임.³⁾

2)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조세심판원 2015. 4. 8. 조심2015부1102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 처분의 당부] 발췌

(4) 2011.11.27. 「법인세법」 제12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개정요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에는 이자·배당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으나, 투자신탁의 이익 외의 배당소득이 법인에게 지급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천징수의 확인이 어려워 개인의 경우와 같이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일치하도록 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나) 개정사항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하

그런데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로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개정안은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안, 의안번호 4878)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경과에 따라 논의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였고,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제120조의 개정 내용은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같은 법 개정 전 규정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 위 법률의 개정이유가 ‘종전 이자·배당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으나, 투자신탁의 이익 외의 배당소득이 법인에게 지급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천징수 확인이 어려워 개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